

의안번호	제 144 호
의 결 년 월 일	1997. 2. 28. (제 60 회)

의 결 사 항
원안가결

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안 년 월 일	1997. 1. 24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

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. 24.

제출자 : 보은군수

☐ 제안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('95.12.19)으로,보건소법시행령이 지역보건법시행령('96.7.13)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보은군보건소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☐ 주요골자

- 제1조중 '보건소법 제8조'를 '지역보건법 제14조'로 함.

☐ 근거법령

- 보건소법 제8조, 지역보건법 제14조

☐ 내용

-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☐ 신·구조문 대비표(개정조례시 붙임) : 따로붙임

☐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☐ 기타 참고자료 붙임

- 관계 법령발췌 : 따로붙임

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 적)중 '보건소법 제8조'를 '지역보건법 제14조'로 한다.

제3조(진료수가)중 '보건사회부장관'를 '보건복지부장관'으로 한다.

제4조(약 가)중 '보건사회부'를 '보건복지부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 1 조 【목 적】 이 조례는 <u>보건소법</u>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 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 제 3 조 【진료수가】 진료수는 <u>보건사</u> <u>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</u> 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. 제 4 조 【약 가】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 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 한다. 다만, 동약가 기준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<u>보건사회부</u>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.	제 1 조 【목 적】 ----- <u>지역보건법</u> 제14조의 ----- ----- ----- ----- 제 3 조 【진료수가】 ----- <u>보건복지부</u> <u>장관</u> ----- ----- ----- 제 4 조 【약 가】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</u> -----

관 계 법 령

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

제정 (1982. 9. 30 조례 제 716호)

개정 (1988. 10. 4 조례 제1093호)

개정 (1989. 3. 10 조례 제1169호)

개정 (1989. 6. 20 조례 제1211호)

개정 (1989. 12. 29 조례 제1220호)

개정 (1991. 12. 28 조례 제1318호)

개정 (1994. 4. 19 조례 제1422호)

제 1 조【목 적】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【진 료 비】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.

제 3 조【진료수가】 진료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.

제 4 조【약 가】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 오입한다. 다만,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사회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.

제 5 조【타법령에 의한 수가】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6 조【기타수가】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, 치면, 열구, 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(지)소 초과 1회 방문수가 적용 징수하고,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 7 조【증명발급 수수료】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(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)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.

제 8 조【입원서약서 및 보증금】 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을 연

서한 입원서약서(별지 서식)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일 내지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 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.

제 9 조【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】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 10 조【납 부】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.

제 11 조【추 징】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.

제 12 조【시행규칙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1982. 9.30 조례 제 761호)

①【시행일】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【다른조례의 규정】 보은군 보건소 조례 제5조 제1항중 “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의 의하여”를 “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에 의하여”로 하며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중 “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”란을 삭제한다.

부 칙 (1988. 10. 4 조례 제109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9. 3. 10 조례 제116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9. 6. 20 조례 제121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9. 12. 29 조례 제1220호)

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1. 12. 28 조례 제131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4. 19 조례 제142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 수 료	비 고
1. 근로자 건강진단서	1통	500	
2.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	"	500	
3. 일반진단서	"	500	
4. 특별진단서	"	2,000	요양신청 병사용 상해진단용
5. 사체검안서	"	5,000	
6. 성별 및 연령 감정서	"	2,000	
7. 위생분야 종사전 건강진단서	"	2,000	X-선, 간염검사 포함
8. 사망진단서	"	500	
9. 출생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	"	500	
10.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	"	300	
11. 1통 초과 발급	"	100	

(별지서식)

입 원 서 약 서

입원년월일	병 석	호 실	등 급	입원보증금	퇴원예정일

주소 :

성명 :

직업 :

위 사람은 금번 귀 보건소에 입원치료를 요함에 있어 귀군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제반요금 등을 지정 기일내에 지체없이 납부함은 물론 치료상에 있어서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타 본인의 신상일체를 인수키로 보증인 연서로 서약함.

년 월 일

위 본 인

①

보증인 주소

성 명

②

地 域 保 健 法

1995. 12. 29

保 健 福 祉 部

檢査를 위하여 醫師・齒科醫師・韓醫師・藥師등에게 그 施設을 이용하게 하거나, 他人의 의뢰를 받아 實驗 또는 檢査를 할 수 있다.

第14條(手數料등) ①保健所는 그 施設을 이용한 者, 實驗 또는 檢査를 의뢰한 者 또는 診療를 받은 者로부터 手數料 또는 診療費를 徵收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診療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第15條(保健所の 施設) 保健所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施設・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.

第16條(保健所등의 표시) 保健所長은 地域住民이 保健所 또는 保健支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第17條(保健所등의 會計) 保健所 및 保健支所の 手數料 및 診療費의 收入은 地方財政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收入對替經費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, 會計事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簡